

<의안번호 제2007-1호>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. 1. 30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의회 신주범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7. 1. 30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실과 직제순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·과·단·소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활동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함(조례안 제3조)
 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⇒ 총무위원회 소관

4. 참고사항

-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-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, 제10조,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“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”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“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”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재조정 하여야 하므로
- 총무위원회의 소관을 당초 의회사무과, 기획감사실, 종합민원실, 행정과, 재무과, 사회복지과, 문화관광과, 전략사업추진단, 보건소, 교육문화센터 등 10개 실·과·단·소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여 11개 실·과·단·소로 재조정코자 하는 의견임.
-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므로 사실상 업무는 지금까지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업무량의 변동은 없으며, 현행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